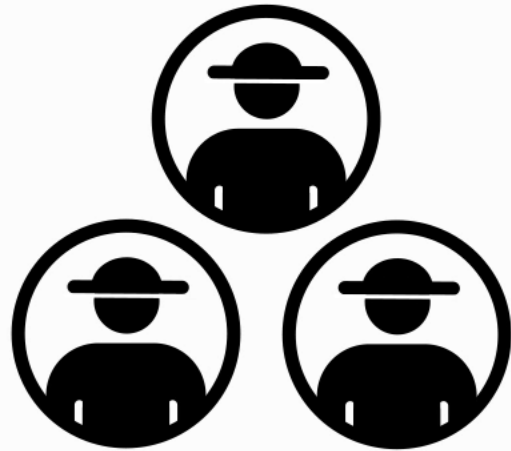


●●● 공익직접지불제란?

-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



환경보전



농촌 공동체 유지



식품안전

●●● 공익직접지불제란?

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

식량안보의 기능

식량수급 및 세계식량시장 불안정에 대처

환경 및 경관 보전의 기능

수자원함양, 홍수조절, 토양보전, 생물종 보존, 아름다운 풍경

경제적 기능

생산증대, 고용증대

사회문화적 기능

전통문화 보전, 지역사회 유지, 정서함양 등

●●● 공익직접지불제란?

농업·농촌 공익증진

정부 재정으로 직불금 지급

공익직불제의
성격

공익기능 제공에 대한 보상

●●● 공익직불제의 목적



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

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

농가 경영위험 관리

●●● 공익직불제의 추진 경과

- 2001 논농업직불제 도입
- 20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
- 20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
- 20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
- **2020 쌀직불·밭고정·조건불리직불사업을
‘기본형 공익직불사업’으로 통합**
- 2022 본 직불지급대상농지 확대 및 부정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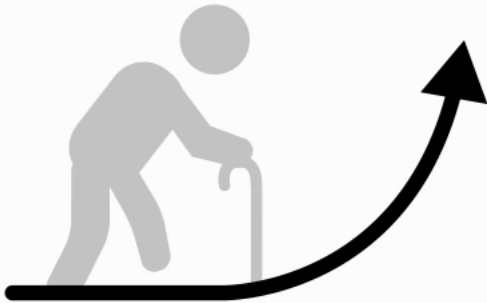
●●●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필요성 확대

고령화·이촌 현상으로 인한
농촌 축소

▶ 식량 생산과 공급에 악영향

지속가능성을 위한
농업활동 강화 필요

환경과 기후변화 대응,
지역사회 유지,
젊은 후계농 확보,
국토의 균형발전



●●● 공익직불제 **개편**

개편 전	
조건불리 직불제	
쌀 직불제	고정
	변동
밭 직불제	고정
	논이모작
친환경 직불제	친환경농업
	친환경축산
경관보전 직불제	



개편 후	
기본형 공익직불제	
선택형 공익직불제	전략작물 직불제
	친환경농업 직불제
	친환경축산 직불제
	경관보전 직불제

●●● 공익직불제 **개편**

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

- 논·밭 형평성
- 콩·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지급률 향상

중·소규모 농업인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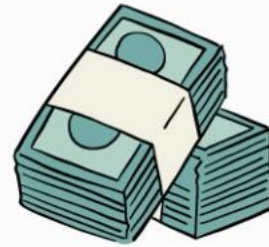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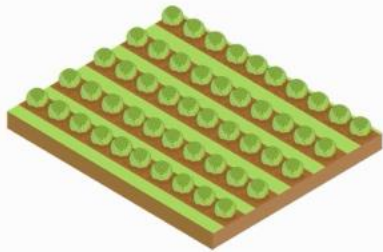
- 소규모 농가는 정액 지급
- 그 외 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단가 차등 지급

농업의 공익기능 확대 위해 생태·환경 관련 준수 의무 강화

● ● ● 소농직불

●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지급하며, 아래 7가지 충족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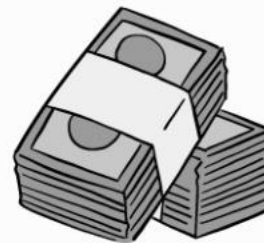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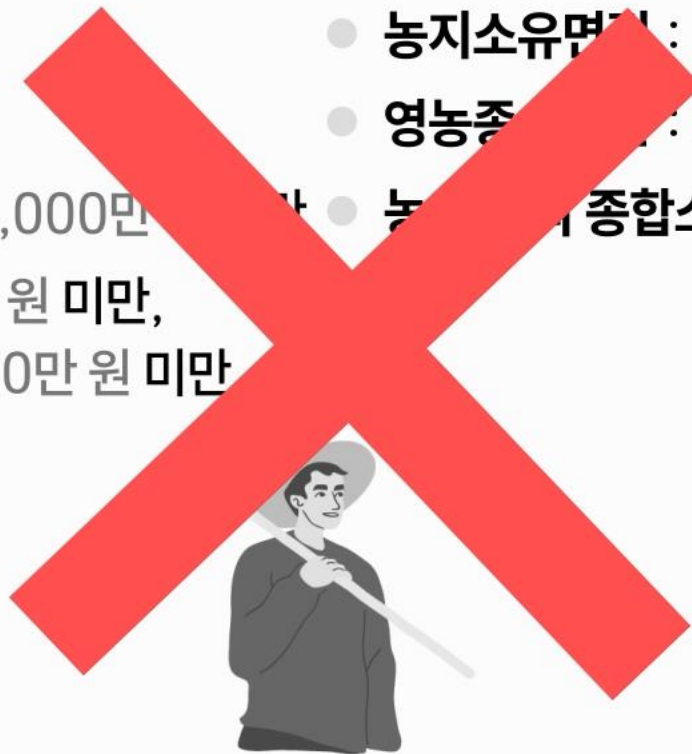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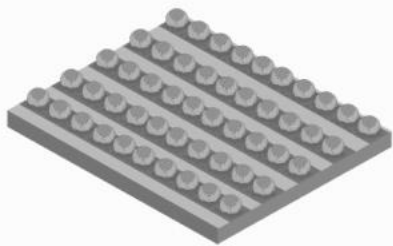
- 경작면적 : 0.1~0.5ha
- 농촌지역 거주기간 : 3년 이상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: 개인 2,000만 원 미만
- 기타소득금액 : 축산업 5,600만 원 미만,
시설재배업 3,800만 원 미만
- 농지소유면적 : 1.55ha 미만
- 영농종사기간 : 3년 이상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: 가구 4,500만 원 미만



●●● 면적직불

●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지급하며, 아래 7가지 충족 요건

- 경작면적 : 0.1~0.5ha
- 농촌지역 거주기간 : 3년 이상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: 개인 2,000만 원 미만, 가구 4,500만 원 미만
- 기타소득금액 : 축산업 5,600만 원 미만, 시설재배업 3,800만 원 미만
- 농지소유면적 : 1.55ha 미만
- 영농종사기간 : 3년 이상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: 가구 4,500만 원 미만



●●● 소농·면적직불 **면적기준 및 단가**

구분	면적기준	단가
소농직불금	0.1ha~0.5ha	130만 원(정액)
면적직불금	2ha 이하 2ha 초과~6ha 이하 6ha 초과	최소 136만 원/ha (지급구간별 역진적 단가체계)

●●●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

농업경영체 등록 농지

- 쌀 직 불 : 1998년~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- 밭 직 불 : 2012년~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조건불리직불 : 2003년~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●●●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

지급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실경작하는 농지

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

일부 위탁 농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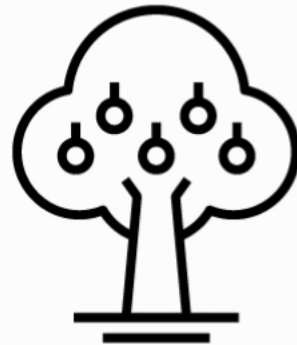
●●●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

일부 위탁 농지

- 벼 : 이앙 또는 파종, 재배관리 및 수확



- 과수 : 가지치기 또는 열매숙기, 재배관리 및 수확



- 벼, 과수 외 : 파종 또는 육묘, 이식, 재배관리 및 수확



●●●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지

본인 소유의 농지이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

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

폐경농지(폐경면적 제외 경작면적 신청 가능)

●●●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지

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
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

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
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

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
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

●●●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 농지

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

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농지

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

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(9.30.) 이전에
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

●●● **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**



●●●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

농업경영체 등록

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

농촌 외 지역 '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'의 요건 충족

●●●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자

농지면적
1천㎡ 미만

농업 외의
종합소득금액
일정금액 이상

농지처분
명령을 받은 자

적법한 권원 없이
점유 또는
사용하는 자

●●●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자

직불금 부정수급자

부정수급 등으로
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

부정수급 등으로 받은
행정처분 미집행자

농업경영체에서
삭제된 농업인

●●●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인 체크리스트

구분	점검항목	발생원인	증빙
농지 자격요건	임대차계약 미비 또는 종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음 ● 농지소유자가 변경되어 계약서 갱신 필요 	농지대장 등록 · 갱신 (국공유지 포함)
	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	읍 · 면 · 동 확인
	농업법인 소유농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없음 	읍 · 면 · 동 확인
	지목이 임야로 확인되나 농지대장 미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23년부터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대장 등록이 필요 	농지대장 등록
	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시거주자 중 농지가 같은 시 · 군 · 구에 0.1ha 미만 	읍 · 면 · 동 확인

●●●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인 체크리스트

농업인 자격요건	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시거주자 중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에 0.1ha 미만 ● 도시거주자 중 농지 면적 합이 1ha 미만 	읍·면·동 확인
	최근 3년간 농자재구매 내역 미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협 등으로부터 농자재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경작 증빙 필요 	농자재구매 영수증 농산물판매증빙자료
	관외경작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소지와 농지 확인 	경작사실확인서 (농지소재지 이통장)
	장기요양등급 판정자(I ~ IV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실경작 여부 추가 확인 필요 	읍·면·동 확인
	환수금 미납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직불금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	읍·면·동 확인
	신규신청자 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영농종사 여부 	경작사실확인서 (농지소재지 이통장)

●●●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인 체크리스트

소농직불 자격요건

농가 구성원의
농지면적 합 1.55ha 이상

- 토지대장에서 전·답·과수원(농지) 중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이 1.55ha 이상

읍·면·동에
소명자료를
제출하여 확인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
시설재배업 소득 추정액이
3,800만 원 이상

- 시설재배업 단위 면적당 품목별 소득(=총수입-경영비) 3,800만 원 이상 추정

읍·면·동에 실질
소득금액을 신고
(직전연도 시설재배업 소득)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
축산업 소득 추정액이
5,600만 원 이상

- 축산업 축종당 마리당 소득(=총수입-경영비) 5,600만 원 이상 추정

읍·면·동에 실질
소득금액을 신고
(직전연도 축산업)

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활동을 보상

생태계 보존, 안전한 식량 생산, 공동체 활성화 등
공익기능을 위한 **기본직불 준수사항**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**이행점검**

농업인의 준수사항 위반 시
직불금 10% 감액



●●● 부정수급 (1)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위반



실경작 위반

지급대상 농지에서
'종사'하지 않음에도
등록·수령



폐경면적 고의 포함

1,000m² 이상
등록·수령

●●● 부정수급 (1)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위반



**임대차계약서
허위 작성**

무단점유지를 등록·수령,
농지를 분할

●●●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

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.

공익직불금 신청내용은 농업인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.

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.